

중수도 [] 설치
[] 변경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0일
신고인	성명(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생년월일	
	주소(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)		전화번호	
시공자 *미확정시 공란	상호(대표자)	업종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		전화번호	
건축물 주 용도		건축 연면적(㎡)		
설치 장소(주소)		물 사용량(㎡/일)		
오수발생량(㎡/일)		중수 처리용량(㎡/일)		
중수 이용량(㎡/일)		중수 이용의 주 용도		
중수 처리방법 및 개요				
중수도의 안전성	수질 악화 시 대책			
	오접(誤接)· 오음(誤飲) 방지대책			
	환경 보존 조치			
착공 예정일		설치완료 예정일		
중수도 관리자				
변경사항(해당시)				

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제주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신고	1. 중수도 사용계획서 2. 처리시설의 위치, 용량,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.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[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(配水) 계통을 포함합니다] 4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	수수료 없음
	변경 신고	1.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2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	

작성방법

-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,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.
-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,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.
-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.
-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(또는 기관)와 관리자(또는 기관)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(민원실)	→	검토	→	결재	→	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발급
신고인		특별자치시·제주특별 자치도·시·군·구 (물 재이용 담당부서)		특별자치시·제주특별 자치도·시·군·구 (물 재이용 담당부서)		특별자치시·제주특별 자치도·시·군·구 (물 재이용 담당부서)		